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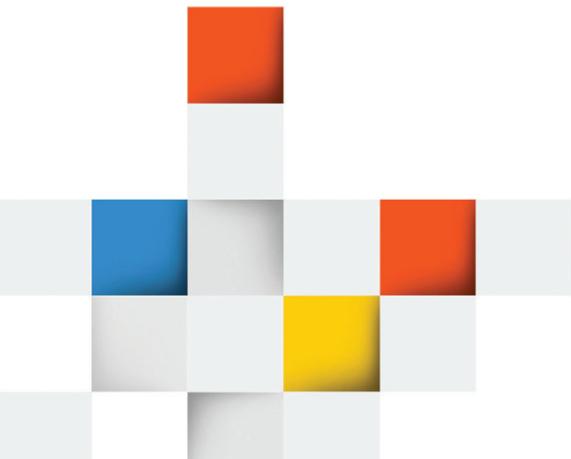


발 간 등 록 번 호
11-1240245-000014-10



한국의 사회동향

Korean Social Trends 2020
<http://sri.kostat.go.kr> 2020



통계청
통계개발원



새로운 노동형태 종사자의 사고 및 안전에 관한 동향

노광표 (한국고용노동교육원)

- 디지털기술의 발전 및 확산, 산업구조의 전환으로 새로운 고용형태 종사자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경계에 있으면서 노동관계법과 사회보호제도에서 배제되어 있다.
- 특수고용형태 종사자와 플랫폼노동자들은 특정 사업주를 규정하기 쉽지 않아, 사용자의 안전보건상 책임을 묻기 어려운 상황이다. 2017년 기준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률은 12.4%이고 적용자 수는 6만 124명이다. 2019년 기준 재해자 수는 총 1,291명이고 사고사망자 수는 9명이다. 직종별로는 커서비스기사의 재해율이 가장 높고,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전체 산업재해의 86.0%가 발생하고 있다.
-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노동의 확산으로 새로운 고용형태 종사자의 비율은 점점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를 고려한 안전보건 실태 파악과 안전 정책이 요구된다.

디지털기술의 발전 및 확산, 산업구조의 전환으로 노동시장은 큰 변화를 겪고 있다. 한 공간에서 하루 8시간 일하는 전통적인 노동과는 뚜렷이 구분되는 새로운 노동형태 종사자들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새로운 고용형태는 근로관계의 변화를 동반하는데, 사용자의 지휘·감독권, 근로자의 종속성이 달라진다. 일하는 사람이 노동자인가 자영업자인가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터에서 발생하는 새로

운 고용형태 종사자들의 사고와 안전에 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새로운 고용형태 종사자들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이들이 노동권 및 사회보험에서 배제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들의 사고 및 안전 피해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새로운 노동형태의 출현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확산에 따라 노동의 개념이 변화하고 있다. 기업이 특정 인간 전체를 고용하는 일자리(job)의 개념에서 특정의 일(work)에 대한 서비스만을 계약하는 시대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시간이 갈수록 소규모의 핵심(a small core) 부분과 유연한 주변부(a flexible periphery)로 이루어진 가상 기업이 더 많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정규직의 비중이 줄어들고 임시직, 파견, 프리랜서, 플랫폼노동 등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른 고용관계 다양화와 새로운 고용형태 변화를 반영하여 국제 노동 종사상 지위 분류 기준(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Status in Employment)을 전면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기



존의 임금 근로, 비임금 근로의 구분 틀을 넘어 임금과 비임금 근로의 경계에서 새롭게 증가하고 있는 취업자를 포함해 종사상 지위 분류 체계를 바꾸는 것이었다. 과거 임금노동자와 자영업자(비임금노동자)로 분류했던 것을 독립 취업자(Independent workers)와 종속 취업자(Dependent workers)로 개정해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 같은 새로운 고용형태를 포괄하는 내용으로 변경하였다.

한국도 국제적인 고용 다변화 추세와 유사하게 새로운 노동형태 종사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먼저 외환위기 이후 효율적 인사관리를 위해 정규직 고용을 최소화하고 아웃소싱하여 파견·용역노동자들이 급증하였다. 통계청의 「경제활동 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2020년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742.6만 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 가운데 비정규직의 비중은 36.3%이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유형별로 보면 한시적 근로자가 460.8만 명, 시간제 근로자가 325.2만 명, 비전형 근로자가 207.3만 명이었다. 이 중 새로운 고용형태를 포괄하고 있는 비전형 근로자는 비정규직 근로자 중 27.9%를 차지한다. 이를 세부화하면 파견 16.4만 명(2.2%), 용역 55.2만 명(7.4%), 특수형태근로 49.8만 명(6.7%), 일일근로 89.6만 명(12.1%), 가정내 근로 4.9만 명(0.7%)으로 구성된다.

코로나19의 확산과 디지털 경제의 확산으로 증가하는 새로운 고용형태의 대표 영역은 특수형태근로와 플랫폼노동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란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노무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로서, 독립 사업자의 외양을 띠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특정 업체 혹은 다수 업체에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직간접적 업무 지시와 감독하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들이다. 일명 ‘위장된 자영업자’로 불리는 이들 노동자는 기존 통계에서 그 규모가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고 있거나 과소 추정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림 X-17]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불완전한 정의나 관련 직종/직업 조사를 통한 간접 추정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정홍준(2019)이 제시한 새로운 분석 전략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는 기존 방식과 달리 특수고용을 임금노동도 자영업도 아닌 근로형태로 소극적으로 정의한 다음 전체 취업자 가운데 엄밀한 의미의 진성 노동자와 비임금 근로자 중 고용인이 있는 자영업, 무급가족 종사자, 프리랜서 및 진성 1인 자영업자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특고 근로자를 정의하였다.

[그림 X-17] 임금근로자와 1인 자영업자 사이에 존재하는 특고 종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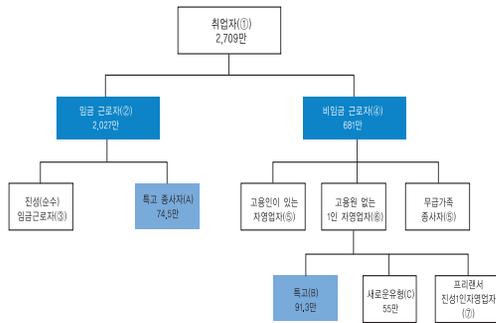
출처: 정홍준, 2019.

정홍준(2019)의 추정 결과에 따르면, 임금노동자로 응답한 특고 종사자는 74.5만 명이었고, 비임금노동자로 응답한 특고 종사자는 91.3만 명으



로 나타나 전체 특고 종사자는 166만 명이었다. 이러한 특고 종사자 추정 연구를 통해 1인 자영업자 중 프리랜서가 아니면서 상대적으로 특고 종속성이 약한 새로운 유형을 구분해냈으며 번역가 등을 포함하는 이 유형에도 약 55만 명의 근로자가 있음을 확인하였다(그림 X-18).

[그림 X-18] 특고 종사자 규모 추정 결과, 2018



출처: 정홍준, 2019.

한편, 디지털 기술의 보급 및 확산에 따라 플랫폼 종사자라는 새로운 고용형태가 증가하고 있다. ‘플랫폼노동¹⁾’은 법률상 용어는 아니며, 일반적으로 ‘디지털 플랫폼의 중개를 통하여 불특정한 조직이나 개인이 문제 해결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과업 혹은 일거리’로 정의된다.

플랫폼노동 종사자에 대한 공식 통계는 없으나 김준영 외(2018)의 우리나라 플랫폼경제종사자의 규모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플랫폼경제종사자는 47~54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는 전체 취업자 대비 1.7~2.0%에 해당되며, 전체 플랫폼경제종사자 중 남성이 66.7%로 여성 33.3%보다 약 2배가 많다. 성별 플랫폼경제종사자의 상위 직업을 보면, 남자는 대리운전, 화물운송, 택시운전, 판매·영업의 순으로 취업자 수가 많다. 이와는 달리 여자는 음식점보조·서빙, 가사육아도우미, 요양의료, 청소, 건물관리 등의 순으로 많다. 플랫폼경제종사자는 남녀 간 직종 분리가 비교적 뚜렷하다.

노동권 및 사회보험에서 배제된 새로운 노동형태 종사자

특수형태근로자, 플랫폼노동 등 새로운 노동형태 종사자가 우리의 관심을 모으는 것은, 무엇보다 이들 중 상당수가 최저임금제, 실업보험, 산재보험과 같은 사회적 보호에서 제외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법처럼 전통적인 임금노동자에게 적용되는 법적 권리에서 배제되는 등 노동시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다.

새로운 노무제공(근로) 계약 및 노무제공(근로) 형태의 출현은 종사자의 계약상 지위의 불안정성 확대로 인해 일자리의 질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새로운 생산방식 도입으로 늘어나는 새로운 노무제공(근로) 유형의 등장과 그로 인한 기존 고용관계에서 모호한 고용형태가 늘어날 수 있고, 디지털화는 근로자가 사업장에 집합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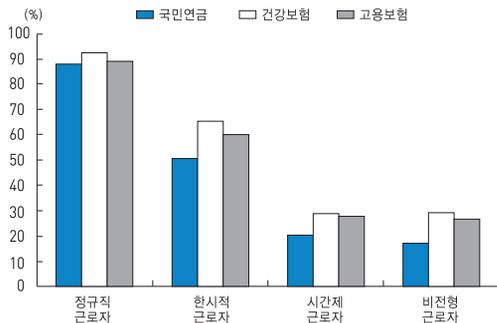
1) ‘플랫폼노동’은 ‘디지털노동’, ‘크라우드워크(crowd work)’, ‘온라인노동’, ‘온디맨드(one-demand) 노동’, ‘긱워크(gig work)’ 등의 용어와 혼용된다.

여 정해진 시간 동안 정형화된 노동을 하는 업무 방식에서도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고용 형태와 업무방식의 변화로 인해 근로기준법으로 규율되던 근로시간, 근로제공 장소, 근로제공 방식, 산업안전보건, 임금산정 및 지급 방법, 노동권 등 집단적 노사관계법 등을 놓고 사회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림 X-19]에서 보듯 사회보험 가입률은 2020년 기준으로 정규직의 경우 국민연금이 88.0%, 건강보험이 92.6%, 고용보험이 89.2%인 반면, 비전형 근로자의 경우에는 국민연금이 17.2%, 건강보험이 29.4%, 고용보험이 27.0%로 정규직과 큰 차이를 보이면서 이들이 사회보험제도의 보호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노동자 권익 대변 기구인 노동조합의 가입률도

[그림 X-19] 임금근로자의 근로형태별 사회보험 가입률, 2020



주: 1) 사회보험 가입률은 해당 근로형태 근로자 중 해당 사회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의 비율임.
 2)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경우 직장가입자만 집계한 수치임.
 3) 국민연금의 경우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법이 정하는 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을 포함함.
 4) 고용보험의 경우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은 응답 대상에서 제외됨.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2020.8.

이와 유사하다. 2020년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 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의하면, 전체 임금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률은 12.3%이다. 근로형태별로 보면, 정규직 근로자 중 17.6%, 비정규직 근로자 중 3.0%가 노동조합에 가입해 있다. 특수형태 근로자 중 일부가 최근 노동조합 신고필증을 받아 단결권을 보장받았으나 그 대상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대리운전기사들의 노동조합인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이 2020년 7월 17일 신고필증을 발급받았다. 음식배달대행기사 노동조합인 라이더유니온은 서울시로부터 2019년 11월 18일 서울지역에 한정된 '서울라이더유니온'으로 노동조합 설립 신고필증 교부를 받았다. 이렇듯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디지털 플랫폼 노동의 출현으로 과거 단일 고용주를 위해 일하는 정규직 중심의 노동 규제와 사회 보호 시스템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워 새로운 노동시장 규제와 사회 보호 시스템의 개편이 요구되고 있다.

새로운 노동형태 종사자의 사고와 건강 실태

노동자의 고용형태는 노동환경에서의 위험노출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데, 특수형태 근로가 정규직보다 위험노출 확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Lee & Ahn, 2016). 다수의 연구에서 정규직보다 특수형태 고용형태가 산업안전보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Bamberger et al., 2012)



산업재해 통계를 통해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들의 산업안전 현황을 보면 <표 X-4>와 같다. 2020년 4월 발표된 「2019년 산업재해발생현황」에 따르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20명으로 이 중 사고사망자는 855명, 질병 사망자는 1,165명이었다. 전년도에 비해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122명이 감소했는데, 이는 사고사망자 수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사망만인율도 줄어서 2018년 근로자 1만 명당 1.12명에서 2019년에 1.08명이 됐다. 질병사망만인율은 오히려 증가했지만, 사고사망만인율은 10% 가까이 줄어 근로자 1만 명당 0.46명이 됐다.

<표 X-4> 산업재해 현황, 2015-2019

	2015	2016	2017	2018	2019
재해자 수(명)					
전체	90,129	90,656	89,848	102,305	109,242
사고	82,210	82,780	80,665	90,832	94,047
질병	7,919	7,876	9,183	11,473	15,195
재해율(%)					
전체	0.50	0.49	0.48	0.54	0.58
사고	0.46	0.45	0.43	0.48	0.50
질병	0.04	0.04	0.05	0.06	0.08
사망자 수(명)					
전체	1,810	1,777	1,957	2,142	2,020
사고	955	969	964	971	855
질병	855	808	993	1,171	1,165
사망만인율(‰)					
전체	1.01	0.96	1.05	1.12	1.08
사고	0.53	0.53	0.52	0.51	0.46
질병	0.48	0.44	0.54	0.61	0.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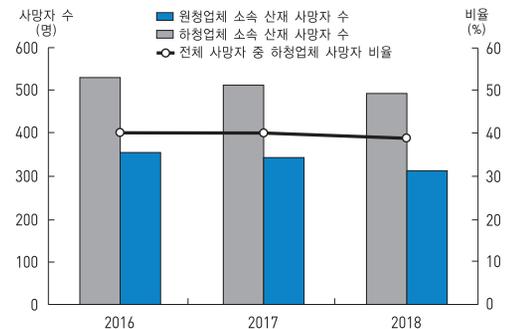
주: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함.
 2) 재해율=(재해자 수÷근로자 수)×100.
 3) 사망만인율=(사망자 수÷근로자 수)×10,000.
 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발생현황분석」, 각 연도.

우리나라의 산업재해통계는 산업(업종)별, 지역별, 사업장 규모별로 제공되지만 고용형태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새로운 고용형태 종사자들의 산업재해통계는 공식적으로 제공되지 않아 기존 통계에서 간접적으로 추산한다.

먼저, 파견·용역노동자들의 산업재해이다. [그림 X-20]을 보면 2016-2018년 산업재해로 숨진 하청 노동자는 모두 1,011명이었다. 2016년 355명, 2017년 344명, 2018년 312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 10명 중 4명은 하청 노동자였다. 2016년과 2017년은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 중 40.2%, 2018년에는 38.8%가 하청 노동자로 나타났다. 이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산업재해에도 그대로 반영된 결과이다.

고용노동부는 2020년부터 하청 사고사망만인율이 높은 원청 사업장을 공개하고 있다. <표 X-5>와 같이 원청보다 원·하청 통합 사고사망만인율이 높은 원청 사업장 11개 업체를 공개하였다. 11개 원청 사업장 소속의 하청업체는 총

[그림 X-20] 원청 및 하청업체 산재 사망자 수, 2016-2018



출처: 이용득 의원실, 2019년 국정감사 자료.

6,460개소이고,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는 총 8만 4,519명(원·하청 통합 17만 6,795명, 원청 9만 2,276명)이며 사고사망자는 총 17명으로 이 중 16명이 하청업체에서 발생하였고, 사망사고 발생 하청업체는 12개소로 50인 미만인 7개소(58.3%)였다. 사고사망만인율은 원·하청 전체는 근로자 1만 명당 0.961명, 하청은 1.893명, 원청은 0.108명이었다. 재해유형은 질식 7명, 추락과 끼임이 각 4명이었다.

다음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안전 실태이다. 과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였으나, 2002년 5월 노사정위원회 합의를 거쳐 2008년 7월 1일부터 보험모집인, 콘크리트믹서트럭운전자,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등 4개 직종 종사자에 도입하였고, 2012년 5월 1일부터 택배기사 및 퀵서비스기사, 2016년 7월 1일에는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에까지 확대하였다.

그런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사업장에서 최초로 노무를 제공한 날부터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되나, 종사자 본인이 산재보험 적용을 원하지

〈표 X-5〉 하청 사고사망만인율이 높은 원청 사업장, 2020

	사고사망만인율(‰)			사고사망자 수(명)			근로자 수(명)		
	원·하청 통합	원청	하청	원·하청 통합	원청	하청	원·하청 통합	원청	하청
총계	0.961	0.108	1.893	17	1	16	176,795	92,276	84,519 (6,460)
○○제련소	7.746	0	15.072	2	0	2	2,582	1,255	1,327 (125)
○○디스플레이	3.501	0	8.977	1	0	1	2,856	1,742	1,114 (494)
○○오일	2.454	0	5.244	1	0	1	4,075	2,168	1,907 (157)
○○자동차(주)	2.210	0	4.843	1	0	1	4,524	2,459	2,065 (204)
○○제철소	1.929	0	3.231	4	0	4	20,741	8,361	12,380 (237)
○○전자(주)	1.091	0	2.536	2	0	2	18,330	10,444	7,886 (641)
한국○○공사	0.674	0.383	2.823	2	1	1	29,661	26,119	3,542 (1,944)
○○제철(주)	0.555	0	0.857	1	0	1	18,033	6,371	11,662 (440)
○○제철소	0.547	0	0.862	1	0	1	18,286	6,688	11,598 (167)
○○조선해양(주)	0.352	0	0.501	1	0	1	28,417	8,474	19,943 (1,123)
○○디스플레이	0.341	0	0.901	1	0	1	29,290	18,195	11,095 (928)

주: 1) 사고사망만인율=(사고사망자 수÷근로자 수)×10,000.

2) ()안의 수치는 하청업체 수임.

출처: 고용노동부,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제」, 2020.



않는 경우 공단에 적용제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대단히 낮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 적용 배제신청을 하여 2017년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률은 12.4%이고 적용자 수는 6만 124명에 불과하다(표 X-6).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현황은 <표 X-7>과 같다. 2019년 기준 재해자 수는 총 1,291명이고 사고사망자 수는 9명이다. 업종별로 보면 운수·창고 및 통신업의 재해자 수 비중이 가장 높고 사망자도 이 업종에서 대부분 발생한다. 직종별로 보면 퀵서비스기사, 택배기사, 콘크리트믹서트럭운전자 순으로 높다. 사업체 규모로 보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전체 산업재해의 85.97%가 발생하고 있다.

〈표 X-6〉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규모와 산재보험 적용 현황, 2017

	사업장 수 (개소)	총 입직자 수 (명)	산재보험 적용자 수 (명)	산재보험 적용률 (%)
전체	6,296	483,254	60,124	12.4
보험설계사	1,913	344,085	33,408	9.7
신용카드모집인	8	16,828	2,959	17.6
대출모집인	258	8,288	1,936	23.4
학습지교사	583	55,557	8,500	15.3
골프장캐디	454	28,437	1,194	4.2
콘크리트믹서트럭운전자	871	12,766	5,687	44.5
택배기사	1,528	12,032	3,485	29.0
퀵서비스기사	662	5,246	2,944	56.1
대리운전기사	19	15	11	73.3

주: 1) 산재보험 적용률=(산재 적용자 수 ÷ 총 입직자 수)×100.
출처: 최은숙 외, 2018.

〈표 X-7〉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업종, 직종 및 사업체 규모별 재해자 수와 사고사망자 수, 2015-2019

	2015년		2017년		2019년	
	재해자 수	사고 사망자 수	재해자 수	사고 사망자 수	재해자 수	사고 사망자 수
전체	143	1	597	5	1,291	9
업종						
금융 및 보험업	17	0	19	0	29	0
제조업	66	1	81	2	49	0
건설업	1	0	1	0	0	0
운수·창고 및 통신업	43	0	460	3	1,170	9
임업	0	0	0	0	1	0
기타의 사업	16	0	36	0	42	0
직종						
보험설계사	18	0	21	0	31	0
콘크리트믹서트럭운전자	66	1	80	2	50	0
학습지교사	14	0	22	0	18	0
골프장캐디	3	0	7	0	14	0
택배기사	42	0	53	0	99	0
퀵서비스기사	0	0	413	3	1,074	8
대출모집인	0	0	1	0	2	0
신용카드모집인	0	0	0	0	0	0
대리운전기사	0	0	0	0	3	1
사업체 규모						
5인 미만	23	0	137	3	535	5
5-9인	8	0	108	0	138	1
10-19인	31	0	137	0	210	1
20-29인	29	1	47	0	130	0
30-49인	31	0	87	0	97	1
50-99인	19	0	68	2	126	1
100-199인	0	0	10	0	42	0
200-299인	2	0	1	0	11	0
300-499인	0	0	1	0	1	0
500-999인	0	0	1	0	1	0

출처: 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통계」, 원자료, 각 연도.

〈표 X-8〉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유형별 재해자 수와 사고사망자 수, 2015-2019

	2015년		2017년		2019년	
	재해자 수	사고 사망자 수	재해자 수	사고 사망자 수	재해자 수	사고 사망자 수
전체	143	1	597	5	1,291	9
사업장외 교통사고	18	0	391	3	953	8
넘어짐	41	0	90	0	180	0
불균형 및 무리한 동작	8	0	17	0	36	0
떨어짐	36	1	39	1	28	0
작업관련질병 (뇌심등)	13	0	10	0	25	0
부딪힘	9	0	16	1	20	0
물체에 맞음	1	0	4	0	14	0
끼임	9	0	17	0	14	1
깔림·뒤집힘	1	0	3	0	12	0
체육행사 등의 사고	4	0	4	0	6	0
이상온도 접촉	0	0	0	0	2	0
절단·베임·찔림	1	0	4	0	1	0
무너짐	1	0	0	0	0	0
폭발·파열	1	0	0	0	0	0
화재	0	0	1	0	0	0
화학물질누출·접촉	0	0	0	0	0	0
기타	0	0	1	0	0	0
분류불능	0	0	0	0	0	0

출처: 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통계」, 원자료, 각 연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발생형태 현황은 〈표 X-8〉과 같다. 2019년을 기준으로 하면 ‘사업장외 교통사고’가 재해자수 및 사망자수 비 중에서 압도적이다. 다음으로 ‘넘어짐’, ‘불균형 및 무리한 동작순이다. 전통적인 재해 이외에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은 고객과의 대면서비스 과정에서 감정노동에 노출된다. 고객과의 관계에

서 업무 이외 서비스 강요, 욕설 등 감정노동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퀵서비스기사와 택배기사들은 본인의 잘못과 무관하게 고객으로부터 욕설을 들은 경험이 다반사라고 호소한다. 요약하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재해자 및 사고사망자는 직종으로는 퀵서비스기사, 재해유형으로는 사업장외 교통사고, 업종으로는 운수·창고 및 통신포수업에서 주로 발생한다.

맺음말

디지털기술의 발전 및 확산, 산업구조의 전환으로 새로운 고용형태 종사자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새로운 고용형태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것은 이들이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경계선에 있으면서 기존의 노동관계법과 사회보호제도의 울타리 바깥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대다수의 종사자는 특정 사업주를 규정하기 쉽지 않거나 고용형태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의 안전보건상 책임을 묻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따라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노동 등 새로운 고용형태 종사자들의 안전 보장을 위해 사고발생 상황과 특성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차별화된 안전정책과 지원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노동의 확산으로 새로운 고용형태 종사자 비율은 점점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안전보건 실태 파악과 안전 정책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 김준영·권혜자·최기성·연보라·박비곤. 2018. 「우리나라 플랫폼경제종사자 규모 추정과 특성」. 한국고용정보원.
- 정홍준. 2019.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규모 추정에 대한 새로운 접근.” 「KLI 고용노동브리프」 제88호. 한국노동연구원.
- 최은숙 외. 2018.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건강관리방안 연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 Bamberger SG, Vinding AL, Larsen A, Nielsen P, Fonager K, Nielsen RN, Ryom P, Omland Ø. 2012. “Impact of organisational change on mental health: a systematic review.” *Occup Environ Med*, 2012 Aug;69(8):592–8. doi: 10.1136/oemed-2011-100381.
- Lee, J. S., & Ahn, J. K. 2016. “A study on risk–exposure degree in working conditions: Comparative analysis by employment type.” *Research on Industrial Relations*, 26(1), 147–173.

